대한장애인육상연맹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24. 2.1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장애인육상연맹(이하 "연맹"라 한다)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명칭은 전문체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규약 제7조 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7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국가대표·후보·신인·꿈나무·기초종목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훈련에 관한 사항
- 2. 국제대회 및 국제 종합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
- 3. 선수육성을 위한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
- 4. 훈련의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- 5. 전임지도자 운영, 관리, 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1. 위 워 장 1인
- 2. 부위원장 1인
- 3. 위원 7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4.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장애인 선수출신 1인, 여성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장애인 선수출신 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선수출신 1인 및 여성 1인 포함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.
 - 1.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 - 2.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 - 3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4. 위원은 해당 종목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위원회 미구성 시 국가대표지도자는 회장 내부결재로 확정할 수 있으며, 추후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-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회의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· 심의한다.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처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연맹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3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4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('24, 2, 1,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